

2026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(기상기후해설사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강원지방기상청 공고 제2025-10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(기상기후해설사) 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26일
강원지방기상청장

1. 최종합격자 명단

구 분	인원(명)	응시번호	성명
기간제근로자(기상기후해설사)	1	가-1	박○○

2.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제출기한/방법: 2026. 1. 28.(수)까지/ 방문, 등기우편, 이메일
 - 제출처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과학단지로 130 강원지방기상청, 인사담당자
 - 채용담당자 이메일: qornn109@korea.kr
- 제출서류
 -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)
 - 증명사진
 -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[붙임1]

3. 기타 행정사항

-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

<붙임 1>

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강원지방기상청 시설관리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**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**하고,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, 불이익에 대해 민·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6년 월 일

성 명 (서명 또는 인)

강원지방기상청장 귀하